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3236호(2025.05.13)

(유효기간 : 2025.05.13 ~ 2026.05.08.)

퇴직연금정기예금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u>이 설명서</u>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u>참고자료</u>이며, <u>실제 계약은 본 상품의 약관, 거치식예금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 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u>

1 상품 개요 및 특징

·상 품 명 : 퇴직연금정기예금

ㆍ상품특징 :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지시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하는

정기예금상품

2 거래 조건

☞ 이자율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2025.6.2일 현재, 이자율은 세전 기준)

	(2025.6.2일 연새, 이사율은 세선 기준)						
구 분	내 용						
취급대상	• 이 예금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지시에 따라 퇴직연 금사업자가 취급						
가입금액	• 1원 이상 제한 없음						
계약기간	 고정이자율형: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또는 31일 이상 5년 이내에서 일수 지정가능 변동이자율형: 1년(3개월 회전), 3년(1년 회전), 5년(1년 회전)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적용						
	구 분(연,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적용이자율	 DB형	2.05	2.10	2.35	1.80	1.85	1.85
	DC형·IRP형	1.95	2.00	2.25	1.70	1.75	1.75
	* 상기 이자율은 기준일 현재 이자율로 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점의 실제적용이자율과 다를 수 있음

구 분	내 용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 자동재예치 시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만기이자 산출근거	•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로 계산한 금액 [이자계산 산식] 계좌잔액×약정이자율×예치일수(입금일~해지전일)/365 입금 제좌잔액 X 약정금리 X 예치일수/365			
만기처리방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더한 금액을 자동 재예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디폴트옵션형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와 결합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계약기간으로 자동 재예치 			
 만기후이자율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재예치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자율 적용			
예금 해지 시 불이익	•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중도해지이자율	• 신규일 또는 최종재예치일의 경과기간별 일반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퇴직연금정기예금 적용이자율과 상이함)			
예치기간	적용	용이자율		
1년 미만	시 일반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자율을 적	해지이자율 산출 기준>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일반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 1년물 기본이자율 적용 일반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 3년물 기본이자율 적용			

내용 구 분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 별 중도해지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경과기간 중도해지이자 가입시 고시금리 X 80% 가입시 고시금리 × 60% 가입시 고시금리 X 40% 가입시 고시금리 X 20% 중도해지이자 1년 미만 가입시 고시금리 X 10% 산출근거 가입시 고<u>시</u>급리 X 5% 60% 이상 80% 미상 신규일 10%미만 10% 이상 20% 이상 40% 이상 80%미만 20%미만 40%미만 60%미만 납입기간 경과비율 (=경과일수/계약일수) 1년 이상 ~ 일반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 1년물 기본이자율 적용 3년 미만 3년 이상 ~ 일반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 3년물 기본이자율 적용 5년 미만

• 다음의 사유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일반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예금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약정이자율(가산이자율 포함) 적용

구분	내 용		
1	· 퇴직급여지급 및 연급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단,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4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5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 건에 해당하는 경우		
6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8	· 가입플랜 변경을 위해 해지하는 경우(단, 해지와 동시에 해지원리금 이상으로 이 예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9	· 사업장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 청하는 경우		
10	·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11	·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사유 발생 시		
1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 단, 1·	 단, 1~10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예금 가입		

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경과기간별 기본이자율

특별중도해지 사유 및 적용이자율

적용

구 분			내 용	
분할해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단,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의 경우,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 3회 이 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다음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 예외 적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의 퇴직급여지급을 위한 경우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 		
예금자 보호 여부	DC/IRP	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최고 5천만원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합산) 보호됩니다.	
914	DB	비해당 _{예금보험공석} 바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불가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	양도 및 당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담보제공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계안해시망법		•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여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 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mark>를 통지</mark> 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mark>거절사</mark> 위		비자가 계약 를 통지해이 ● 위법계약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시 <mark>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mark> 하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 하며, 거절 시에는 <mark>거절사유와 함께 통지</mark> 하여야 합니다. 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할수 있음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은행은 법령, 타인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 		
	기 타 • 이 예금은 통장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제한사항 • 이 예금은 질권 설정이 불가합니다.			

3 유의 사항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IBK기업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법·관계법령, 약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동 상품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라오며, 상품가입 후 민원이 있을 경우 거래 영업점, 금융소비자지원부(080-800-011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해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사용자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입자	■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제13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 법령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
디폴트옵션제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로써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적립금	■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